㈜XXXX 프로젝트 제작 계약서

㈜XXXX (이하 "갑"이라 한다)와 OOO(이하 "을"이라 한다)은 아래와 같이 프로젝트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로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.

제 1 조 【계약의 목적】

본 계약은 "갑"이 제작 의뢰한 프로젝트 제작을 "을"이 제작하는데 있어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데 있다.

제 2조【계약내용】

"갑"과 "을"이 계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제작물 : ㈜ XXX 프로젝트를 지속적 협의 하에 제작하기로 한다.

2. 제작기간: 201X 년 X 월 XX 일 부터 2017 년 X 월 XX 일까지

3. 납품방법: 프로젝트 제작물 1 건

4. 총제작비 : 일금 X 만원 정(₩X,000,000) (원천징수 3.3% 포함)

제 3 조 【제작비 결제방법】

- 1. "갑"은 제 2 조의 총 제작비에 대하여 "을"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한다.
- 2. "갑"은 계약 후 3 일 이내에 "을"의 지정계좌로 협의한 제작비 총액의 50% (원천징수 3.3% 제외) 를 선금으로 지급한다.
- 3. "을"은 제작물 최종 컨펌 후 3 일 이내에 "을"의 지정계좌로 협의한 제작비 잔액을 모두 지급한다.
- 4.지정계좌: XX 은행 XXXX 예금주: XXX

제 4 조 【계약파기와 제작비 환불 및 정산】

본 프로젝트 를 제작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업무에 "갑"과 "을"은 계약을 파기하며 그 제작비를 정산 한다.

- 1. "갑"이 의뢰한 프로그램이 관계법규 또는 불가항목적인 여건으로 "을"이 제작할 수 없을 경우, "을"은 그때까지 소요된 제작비를 제외하고 기타 금액은 환불한다.
- 2. "갑"의 사정상 제작이 중단된 경우, "을"은 "갑"에게 진행된 부분에 대한 금액을 청구 정산할 수 있다.
- 3. 본 계약의 체결 후 "갑"이나 "을" 중 일방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상대방에게 전체 계약금액의 10%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 5조【"을"의 의무】

"갑"과 "을"은 서로 합의된 제작 일정표 (제작비 예산포함) 에 의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그 협약된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태만히 하였을 때 "을"은 "갑"에게 배상하여야 한다.

제 6조 [업무 위임]

"을"은 "갑"의 동의 없이 그 업무를 제 3 자에게 위임할 수 없으며 도급 시킬 수 없다.

제 7 조 【제작권 관련사항】

본 프로젝트 제작과 관련된 저작권은 "갑"과 "을"이 동시에 가지며 아래와 같은 합의를 한다.

- 1. "갑"은 완성본에 대한 저작권만 소통하며 원본에 대한 소유권은 "을"이 가진다.
- 2. 이외의 저작권에 대하여서는 "갑"과 "을"은 별도 계약 한다.

제 8 조 【제작협조 및 지원】

본 프로젝트의 원만한 제작을 위해 "갑"과 "을"은 서로 협조하여 제작 차질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서로 지원한다.

제 9 조 【계약기간】

상기 프로젝트에 대한 "갑"과 "을"의 계약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작품이 완성되어 납품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.

제 10 조 【분쟁해결】

본 계약상의 불이행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에 관한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한다.

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 통을 작성, 서명 날인 후 "갑"과 "을"이 각각 1 통씩 보관한다.

201X 년 X 월 XX 일

"갑" "을"

서울시 XX 구 XXXX XXX 서울시 XX 구 XXXX XXX (XX 동 X 가, XX 빌딩 X 층) (XX 동 X 가, XX 빌딩 X 층)

㈜ XXXX (인) XXXX (인)

㈜XXXX 프로젝트 제작 계약서

㈜XXXX (이하 "갑"이라 한다)와 OOO(이하 "을"이라 한다)은 아래와 같이 프로젝트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로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.

제 1 조 [계약의 목적]

본 계약은 "갑"이 제작 의뢰한 프로젝트 제작을 "을"이 제작하는데 있어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데 있다.

제 2 조 【계약내용】

"갑"과 "을"이 계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1. 제작물 : ㈜ XXX 프로젝트를 지속적 협의 하에 제작하기로 한다.
- 2. 제작기간: 201X 년 X 월 XX 일 부터 2017 년 X 월 XX 일까지
- 3. 납품방법: 프로젝트 제작물 1 건
- 4. 총제작비: 일금 X 만원 정(₩X,000,000) (원천징수 3.3% 포함)

제 3 조 [제작비 결제방법]

- 1. "갑"은 제 2 조의 총 제작비에 대하여 "을"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한다.
- 2. "갑"은 계약 후 3 일 이내에 "을"의 지정계좌로 협의한 제작비 총액의 50% (원천징수 3.3% 제외) 를 선금으로 지급한다.
- 3. "을"은 제작물 최종 컨펌 후 3 일 이내에 "을"의 지정계좌로 협의한 제작비 잔액을 모두 지급한다.
- 4.시정계좌 : XX 은행 XXXX 예금주: XXX

제 4 조 【계약파기와 제작비 환불 및 정산】

본 프로젝트 를 제작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업무에 "갑"과 "을"은 계약을 파기하며 그 제작비를 정산 한다.

- 1. "갑"이 의뢰한 프로그램이 관계법규 또는 불가항목적인 여건으로 "을"이 제작할 수 없을 경우, "을"은 그때까지 소요된 제작비를 제외하고 기타 금액은 환불한다.
- 2. "갑"의 사정상 제작이 중단된 경우, "을"은 "갑"에게 진행된 부분에 대한 금액을 청구 정산할 수 있다.
- 3. 본 계약의 체결 후 "갑"이나 "을" 중 일방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상대방에게 전체 계약금액의 10%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 5조【"을"의 의무】

"갑"과 "을"은 서로 합의된 제작 일정표 (제작비 예산포함) 에 의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그 협약된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태만히 하였을 때 "을"은 "갑"에게 배상하여야 한다.

제 6조【업무위임】

"을"은 "갑"의 동의 없이 그 업무를 제 3 자에게 위임할 수 없으며 도급 시킬 수 없다.

제 7 조 【제작권 관련사항】

본 프로젝트 제작과 관련된 저작권은 "갑"과 "을"이 동시에 가지며 아래와 같은 합의를 한다.

- 1. "갑"은 완성본에 대한 저작권만 소통하며 원본에 대한 소유권은 "을"이 가진다.
- 2. 이외의 저작권에 대하여서는 "갑"과 "을"은 별도 계약 한다.

제 8 조 【제작협조 및 지원】

본 프로젝트의 원만한 제작을 위해 "갑"과 "을"은 서로 협조하여 제작 차질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서로 지원한다.

제 9 조 【계약기간】

상기 프로젝트에 대한 "갑"과 "을"의 계약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작품이 완성되어 납품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.

제 10 조 【분쟁해결】

본 계약상의 불이행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에 관한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한다.

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 통을 작성, 서명 날인 후 "갑"과 "을"이 각각 1 통씩 보관한다.

201X 년 X 월 XX 일

"갑" "을" 서울시 XX 구 XXXX XXX 서울시 XX 구 XXXX XXX

(XX 동 X 가, XX 빌딩 X 층) (XX 동 X 가, XX 빌딩 X 층)

㈜ XXXX (인) XXXX (인)